

국내 가스관련법의 보험관련 법규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Insurance related law and regulations of the related domestic gas law

1) 송수정 *

Song, Soo, Jeong

강경식**

Kang, Kyong, Sik

Abstract

가스의 편리성, 저공해성, 열효율성 등으로 인해 가스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가스의 위험성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가스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스사고는 엄청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불안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가스사고 위험을 줄 수 있는 원천적인 사전대책이 제도적으로 철저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가스관련법의 보험에 관한 법규의 개선을 통하여 가스사고에 대한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서론

1964년 대한석유공사 울산공장의 가동을 통해 가스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게 되면서, 이제 가스는 11만여 km의 배관과 1,230만여 개의 용기에 의해 전국 1,600만여 가구에 공급되며, 이는 우리 나라 전체가구의 99%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격적으로 가정연료로 사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스의 편리성, 저공해성, 열효율성 등으로 인해 가스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가스의 위험성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가스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1994년에 발생한 아현동 가스폭발사고와 뒤이어 발생한 대구도시가스 폭발사고에서 보듯이 가스사고는 엄청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불안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안전관리체계를 시설검사 위주에서 운영·관리측면을 포함하는 자율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가스사고 위험을 줄 수 있는 원천적인 사전대책이 제도적으로 철저히 마련되어

1) * 신성대학 산업경영정보과

** 명지대학교 산업공학과

야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가스관련법의 보험에 관한 법규의 개선을 통하여 가스사고에 대한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예방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가스관계법의 보험관련 법규 개선

2.1 보험가입규정의 명확화

(1) 개정내용

책임보험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보험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보험으로 가스관련 3법에서, 즉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5조 제1항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3조 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 중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를 「...손해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지급책임을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

[표 2-1]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예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 【보험가입】 ①도시가스사업자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는 그가 공급 또는 사용하는 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5.8.4, 99.2.8>	제43조 【보험가입】 ①도시가스사업자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는 그가 공급 또는 사용하는 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지급책임을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2 보상한도액 확대

(1) 개정내용

가스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상을 위해 현재 설정된 보상보험금이 한도액은 보상한도액의 현실화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1인당 사망보험금을 기준으로 해서 2001년 8,000만원, 2003년 10,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한편 가스관련 3법에서의 보험금액은 각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 제2항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을 준용하고 있음)을 개정하여야 한다.

2.3 의무보험 가입대상범위의 확대

(1) 개정내용

[표 2-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 예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 【보험가입등】 ①생략 ②영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 보험금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6천만원 이상일 것 2.이하 생략	제53조 【보험가입등】 ①좌동 ②영 제28조제3항의 구정에 의한 가입 보험금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원 이상일 것 2. 이하 좌동

가스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물적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기 위한 의무 보험가입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가스관련협회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개선을 하되 가스사고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해당조문을 개정한다.

[표 2-3]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예시

현 행	개 정 안
제64조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험】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는 월사용예정량이 3천세제곱미터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상의 주택용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를 제외한다.	제64조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험】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는 월사용예정량이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상의 주택용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를 제외한다

2.4 가스사고예방지원금제도

(1) 개정내용

가스사고의 사전적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각 보험사업자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원수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가스사고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산업자원부장관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자의 미가입시 부과하는 과태료 중 일정비율을 정하여 가스사고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도록 한다. 따라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5조 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3조 제3항,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표 2-4]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예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 【보험가입】 ①~② 생략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매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수익금의 일부를 도시가스 사고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보험가입】 ①~② 좌동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마다 그 사업년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원수보험료의 일부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제54조 1항의 과태료 중 일부를 도시가스사고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결론 및 제언

보험선진국에서는 가스사고 위험을 줄 수 있는 원천적인 사전대책이 제도적으로 철저히 마련되어 있다. 지금까지 본 논문은 가스관련법의 보험제도의 개선을 통해 가스사고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는 예방기능의 강화와 사고발생 시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보상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가스사고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보험가입규정의 명확화, 보상한도액의 확대, 의무보험 가입대상자범위의 확대, 가스사고예방지원금제도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보험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보험업법에 근거한 제반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보험계약자 뿐만아니라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위원회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 관련 이해 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_____, 고압가스안전관리법, <http://www.kgs.or.kr>, 1999
2. _____,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http://www.kgs.or.kr>, 1999
3. _____, 도시가스사업법, <http://www.kgs.or.kr>, 1999
4. _____,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http://www.kgs.or.kr>, 1999
5. _____,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http://www.kgs.or.kr>, 1999
6. _____,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http://www.kgs.or.kr>, 1999
7. 송수정, 가스사고예방지원금 운영방법의 개선에 관한 연구, 안전경영과학회지 제1권 제1호, 1999
8. 채충근, 보험과 가스사고예방, <http://www.gasinfo.net>, 2000